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0조(이의제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 5. 22. ~ 2023. 6. 5.
 5.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
 - 가.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62-970-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 내역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1부.